

의안번호	2205433
의 퇴 인	윤한홍의원
회 답 일	2024.12.11
추 계 번호	24B389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3조 (비용부담의 원칙)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단서 신설)</u>	의무규정 재량규정
2	안 제44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업지역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2.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규정
1	안 제43조 (비용부담의 원칙)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4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 보조가 이뤄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공업지역지구,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추계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지원 내용과 규모에 관한 계획이 불확정적이어서 정비사업 지구에 대한 재정지원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다만, 현재 도시공업지역 정비사업 시범지구는 5개 지구가 지정되고, 3개 지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참고자료]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도시공업지역 시범사업 현황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별 현황

구분	경기군포	부산영도	부산사상	인천동구	경북영천
위 치	군포시 당정동 59일원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1-44	부산시 사상구 삼 락 동 380-17	인천시 동구 화 수동 5-54	경북 영천시 망 정동 8-12
도시관리 계획	일반공업, 준공 업	전용공업	준공업	일반공업	일반공업
면 적	77,939㎡ (유한양행 72,951, 기타 3,228)	89,578㎡ (한국타이어 82,032, 기타 7,546)	17,620.5㎡ (삼락중 9,324, 솔빛학교 7,779)	22,752㎡ (일진전기)	5,369㎡
대상지현 황	유한양행 이적지(폐업), 나대지방치	한국타이어 물류공장 철수(18.12)	삼락중(폐교), 솔빛학교 (이전예정 23.9)	폐업 후 세트장활용중	공업지역 내 유희부지
사업비	4,548억원	2,859억원	1,168억원	1,456억원	517억원
개발용도	산업, 복합, 주거, 지원시설	해양신산업, 산업, 상업, 지원, 주거	탄성소재연구소, 일자리연계주택, 캠퍼스혁신센터, 공공임대산업	호텔, 주거, 산업혁신센터, 공공임대산업	복합건축물
시범사업 선정	'19.11.21	'19.11.21	'19.11.21	'19.11.21	'19.11.21
기본협약 체결	'19.12.27	'20.05.12	'20.05.12	'19.12.18	'20.07.14
우선추진 후보지	'20.03.24	'20.03.24	'20.03.24	'20.03.24	'20.03.24
후보지 경투심	'21.12.24	'21.8.18	'20.08.19		
토지 비 축	매입방침	'19.01.09	'19.12.18	'19.12.18	'19.12.18
	계약체결	'19.12.26	'20.12.23	'21.12.31	
입 소 구 역	구역 신청	-	-	'20.10.07	-
	도계위심 의	-	-	'21.04.01	-
	결정고시	-	-	'21.12.29	-
예 타	사타용역	'20.10.	'20.10.	'21.04.	-
	예타신청	'22.08.	'23.02.	'22.12	-
	예타완료	'23.05.	'23.10.	23.11. (미통과)	-

구분		경기군포	부산영도	부산사상	인천동구	경북영천
인 허 가 및 착 공	산업혁신 구역 신청	‘24.10.	‘25.09.	‘26.06.		
	산업혁신 구역 승인	‘25.06.	‘26.03.	‘26.12.		
	착공	‘26.01.	‘26.06.	‘27.03.		
	준공	‘29.03.	‘29.12.	‘29.01.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